



보도	2024.8.7.(수) 조간	배포	2024.8.6.(화)	
담당부서	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	책임자	국 장	임권순 (02-3145-6700)
		담당자	팀 장	심여희 (02-3145-6717)

## 펀드 의결권 행사 · 공시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

- 자산운용사가 충실한 펀드 의결권 행사 ·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도록 지속 점검 · 지도할 예정 -

### 1 점검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'23.10월 「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」 개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
  - '24.3월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당부한 바 있음
- 아울러, 펀드 의결권 불성실 행사·공시 사례 등을 공개하여 자산운용사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자 '24.1분기 정기 주주총회 안전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·공시 내역을 점검

#### < 펀드 의결권 행사 · 공시 제도 개요 >

-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 등을 거래소에 공시
  - (공시 대상) 펀드별 자산총액의 5%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
  - (공시 기한) 전년 4.1. ~ 당해 연도 3.31. 중 행사내용을 매년 4. 30.까지 공시
  - (공시 내용)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,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, 펀드별 소유 주식 수, 운용사와 의결권행사 대상 법인과의 관계 등

##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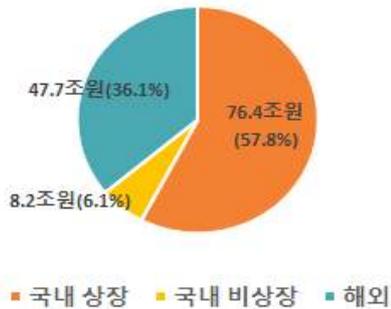
## 펀드 보유 주식 및 의결권 행사 현황 ('23.12말)

- **(주식 보유 현황)** '23년말 현재 공·사모 펀드\*는 국내 상장주식 76.4조원 (시가총액의 3.0%), 비상장주식 8.2조원 및 해외주식 47.7조원 보유

\*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외

- **(운용사별)** 보유액은 삼성 12.9조원, 미래에셋 12.3조원 및 KB 6.6조원 등 상위 3사 운용사 펀드가 전체 펀드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의 41.6% 차지

### < 펀드 보유 주식 규모 >



### < 상위 5개사 상장주식 보유 현황 >

(단위: 조원, %)

운용사명	펀드 보유액	시가총액 비중
삼성	12.9	0.50
미래에셋	12.3	0.48
KB	6.6	0.26
NH아문디	3.4	0.13
한국투자	3.3	0.13

- **(의결권 행사 현황)** '23년말 현재 펀드 보유 주식 중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(펀드별 공시로 인해 중복 종목 포함) 비중은 4.8%

- **(행사율)**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59%, 그 외 법인은 27%

- **(행사방향)** 의결권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93% 이상 찬성 의견 행사

### <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 (단위 : 종목, %) >

구분	보유 종목 수*		행사율		행사 방향		
	(A)	비중	행사 종목수(B)	행사율 (B/A)	찬성	반대	중립
의결권 공시대상 법인	9,349	4.8	5,473	58.5	94.6	2.6	2.8
기타 법인	183,787	95.2	49,649	27.0	93.3	4.7	2.0
합계	193,136	100.0	55,122	28.5	93.5	4.5	2.0

\* 펀드별 의결권 행사로 인해 각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중복 종목 포함

### 3

##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결과

### < 점검 개요 >

- (점검 대상) '24.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 (27,813개 안건)
- (점검 내용) ①의결권 행사·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, ②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 공시 현황, ③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및 ④의결권 행사의 적정성

### 1 의결권 행사·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

-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별 행사·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,
  - 점검 대상 274개 중 265개사(96.7%)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, '주주총회 영향 미미' 및 '주주권 침해 없음' 등 형식적 기재

#### < 의결권 행사·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(항목별 중복 가능, 단위 : 개사, %) >

구분	유형별 불성실 기재						적정 기재	점검대상 운용사
	주주총회 영향 미미	주주권 침해 없음	특이사항 없음	세부지침 언급*	기타	미기재		
운용사수 (비중)	87 (31.8)	71 (25.9)	30 (10.9)	34 (12.4)	75 (27.4)	2 (0.7)	8 (2.9)	274 (100.0)

\*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언급하지 않고 세부지침에 따라 찬성했다고 기재(11개사는 세부지침 미공시)

### 주요 사례

#### 1 미흡 사례

- ✓ A사는 행사·불행사 사유를 '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'으로 기재했으나,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음
- ✓ B사는 "찬성" 사유를 '특이사항 없음'으로 일괄하여 기재
- ✓ C사는 '주주총회 영향 미미' 등의 사유로 의결권 일괄 불행사

#### 2 모범 사례

- ✓ D사는 재무제표 승인(안)과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의 배당성향이 0%로 업종 평균 대비 극히 적지만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시설투자계획 등을 고려할 때 과소 배당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는 점 등 찬성 사유를 상세 기재

## ②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의 형식적 공시

-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함에도,
  - 121개사(44.2%)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, 안전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고,
  - 51개사(18.6%)만이 '23.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

<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공시 현황 (단위 : 개사, %) >

구분	세부지침 공시			세부지침 미공시	합계
	'23.10. 개정 가이드라인		소계		
	반영	미반영			
운용사 수 (비중)	51 (18.6)	102 (37.2)	153 (55.8)	121 (44.2)	274 (100.0)

### 주요 사례

#### ① 미흡 사례

√ E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기본정책에 '15.10월 시행령 및 '23.10월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으며, 안전별 세부지침도 미공시

#### ② 모범 사례

√ F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기본정책 및 세부지침을 모두 공시하였으며, 세부지침에 '23.10월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

## ③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 미준수

-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할 때 공시 항목별 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,
  - 의안명(246개사, 89.8%)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, 의안 유형(233개사, 85.0%)과 대상 법인과 관계(198개사, 72.3%) 등 미기재

< 주요 공시서식 기재 오류 현황 (항목별 중복 가능, 단위 : 개사, %) >

구분	의안명 미흡 기재	의안 유형 미기재	대상 법인과 관계 미기재	지분 비율 오기재	점검대상 운용사
운용사 수 (비중)	246 (89.8)	233 (85.0)	198 (72.3)	12 (4.4)	274 (100.0)

## 주요 사례

### ① 미흡 사례

- √ G사는 의안명에 해당 의안의 상세내용(예: 사외이사 ○○ 선임 등)을 기재하지 않고 "임원 선임의 건"으로만 기재
- √ H사는 지분 비율 기재 시 발행주식수 대비 보유주식수를 기재해야 함에도 펀드 자산 중 해당 종목의 보유 비율을 기재함
- √ I사는 "재무제표 승인" 관련 안건에 대해 의안 유형으로 "결산 및 배당"을 기재해야 함에도 미기재

### ② 모범 사례

- √ J사는 피투자회사의 "감사(위원) 선임 및 해임(안)"에 대한 의안명을 "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○○○선임의 건"으로 상세 기재
- √ K사는 지분비율 작성시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수 대비 보유주식 수에 해당하는 0.17%를 적절히 기재
- √ L사는 "서면의결권 행사제도 폐지 및 차입처 다변화를 위한 정관변경(안)"의 의안 유형을 "정관변경"으로 적절히 기재

## ④ 의결권 불성실 행사

-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,582개 안건\*을 점검한 결과, 1,124건(71%)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판단 불가

\* '24.1분기 주총 안건(27,813개) 중 운용사별 행사방향이 다른 안건 추출

- 344건(21.7%)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했으며,
- 114건(7.3%)은 1%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불성실 행사

### < 의결권 불성실 행사 현황 (단위 : 건, %) >

불성실 행사 (불행사, 내부지침 반하는 행사)						성실 행사	판단 불가**	점검 대상 안건
불행사*	임원 임면	정관변경	임원 보수	기타	소계			
61 (3.9)	24 (1.5)	23 (1.5)	3 (0.2)	3 (0.2)	114 (7.3)	344 (21.7)	1,124 (71.0)	1,582 (100.0)

\* 보유 지분을 1% 이상

\*\* 불성실공시(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 미흡)로 인해 판단 불가

## 주요 사례

### 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정관 변경(안)에 대해 찬성

- 甲사는 사외이사의 수를 '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'으로 하는 정관 변경(안)을 상정했으나,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인 甲사는 사외이사 수를 '이사 총수의 과반수'가 되도록 해야 함
- (미흡 사례) M자산운용은 甲사 정관 변경안의 법규 위반소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정관 변경(안)에 찬성
- (모범 사례) N자산운용은 甲사 정관 변경안이 법규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관 변경(안)에 반대

### ② 내부지침에 반하는 임원 선임(안)에 대해 찬성

- 乙사는 '23년 이사회 출석률이 25%에 불과한 X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재선임(안)을 상정
- (미흡 사례) O자산운용 내부지침에 따르면 '이사회 출석률 75% 미만' 후보자에 대해 반대해야 함에도, 별다른 사유 없이 X후보자 선임 안건에 찬성
- (모범 사례) P자산운용은 '이사회 출석률 75% 미만'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도록 정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X후보자 선임 안건에 반대

### ③ 내부지침에 반하는 임원 보수 증액(안)에 대해 찬성

- 丙사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5% 감소했음에도 이사 보수 한도액 증액(안) (예: 40억원→ 80억원)을 상정
- (미흡 사례) Q자산운용 내부지침에 따르면 이사 보수 결정시 '경영성과'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, 영업이익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丙사 안건에 찬성
- (모범 사례) R자산운용은 이사 보수 결정시 '경영성과'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보수 한도가 경영성과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반대

### ④ 상당 지분을 보유(예: 1%)하고 있음에도 의결권 불행사

- (미흡 사례) S자산운용은 운용중인 펀드 내 丁사 주식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음에도, 주총 의사결정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의결권 불행사
- (모범 사례) T자산운용은 운용중인 펀드 내 주식 지분을 1% 이상 소유한 戊사 등 36개사에 대해 내부지침에 따라 의결권 행사

## 4

### 평가 및 향후 계획

- 금번 점검 결과 기대와 다르게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 위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, 행사·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
  -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,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금융감독원은 펀드 의결권 행사·공시가 형식적인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
  - 금번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, 추후에도 관련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임
- 아울러,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
  - 자산운용사가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는 성실한 수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겠음